

선박보안정보 통보항목의 일부변경에 대하여

외국에서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한 중요한 알림입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2004년7월1일시행) 에 의하여 외국에서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모든 선박은 일본에 입항(입역) 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해상보안부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2월1일부터 통보항목이 일부 변경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변경사항)

1. 통보사항에 다음 항목이 추가됩니다.

- 승선하는 승무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선원수첩의 번호 및 직급명
- 승선하는 여객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출발지 및 최종 목적지

2. 지금까지 통보사항이던 다음 사항은 없어집니다.

- 각 기항지에서 승선한 여객중 일본내에서 하선할 예정인 사람의 유무

※ 추가된 항목은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FAL양식 권장)를 첨부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이 통보는 일본선박 / 외국선박, 선박의 크기, 종류 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려고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의무화 됩니다.

※ 이 통보는 일본 항구에 입항할 경우와 특정해역(도쿄만 이세만 또는 세토나이카이)에 입역할 경우도 필요합니다.

※ 이 통보는 일본으로 입항하기 직전의 항구가 외국 항구인 경우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항한 후에 일본국내 항해에는 통보가 필요없습니다.)

※ 이 양식은 항장(港長)에 대하여 하는 위험물 하역허가 신청서, 정박장소 지정원, 이동허가신청, 항만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계류시설 사용허가신청, 지방운수국에 대하여 하는 보장계약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보는 어디로 하면 됩니까?

- * 입항할 항구를 관할하는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입항할 항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 또는 일본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특정해역에 입역할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곳에 있는 관구해상보안본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기타 통보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통보자...기본적으로는 선장이나, 선장의 위임을 받은 소유자, 그들의 대리인 (대리점 등)도 OK
- * 통보방법...항만 EDI 이외에 FAX, 서면으로 우송·직접 제출 등도 OK

◆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24시간 전까지 통보한 후에 입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즉시 정해진 해상보안부서에 통보해 주십시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생겨서 즉시 입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항한 후에 바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가까이 있는 관구해상보안본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통보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하여 주십시오.

선박보안정보

1. 명 칭		2. 국제해사기관선박식별번호		3. 어선등록번호	
4. 선 종	화물선 컨테이너선 화객선 객선 유송선 어선 기타				
5. 국 적		6. 선 적 항			
7. 총 톤 수		8. 항 행 속 력			
9. 소유자, 운항자, 선장,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소유자				
	운항자				
	대리인				
10. 당해 선박이 통보될 한 시각 및 위치, 통보자의 성명	통보한 시각	통보한 위치	위도	경도	통보자의 성명
11. 입항 하려고 하는 일본의 항구 및 그 항구의 계류하려고 하는 계류시설의 명칭 및 입항 예정시각	항구 이름 계류시설 이름 입항예정시각				
	12. 일본의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입항 하려고 하는 다른 일본의 항구 및 그 일본 항구의 계류하려고 하는 계류시설의 명칭 그리고 입항예정시각	항구 이름 및 계류시설 이름 입항예정시각			
13. 이후 당분간 내항선	yes no	14. 선박경보통보장치 또는 선박경보통보장치에 상당하는 장치	있음 없음 고장		
15. 당해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국제해상운송보안지표 또는 국제해상운송보안지표에 상당하는 지표	level. 1 level. 2 level. 3				
16. 선박보안관리자 또는 선박보안관리자에 상당하는 자의 성명 및 직명 (Ship Security Officer)	성명 직명				
17. 선박보안증서, 임시선박보안증서 또는 선박보안증서, 임시선박보안증서에 상당하는 증서의 번호 및 발급기관	번호 발급기관				
18. 항해중 보안에 관한 이면, 보안 조치에 관한 특이사항(조약 제8 규칙 2의 잠정의 보안조치 및 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포함) 기타 참고사항					
19. 해상보안청과의 연락방법	선박전화번호 INMARSAT 전화번호 기타 연락방법 FAX번호				

선박보안정보

24. 입항예정 항구에서 내릴 화물	①형태 ②품명 ④적재항구				③수량	
	① ② ④				③	톤
	① ② ④				③	톤
	① ② ④				③	톤
25. 기타 일본항구(입항예정항구 이외)에서 내릴 화물	①형태 ②품명 ④적재항구				③수량	
	① ② ④				③	톤
	① ② ④				③	톤
	① ② ④				③	톤
26. 하역할 위험물	①品名 ②적재항구	③등급	④국련(UN) 번호	⑤용기등급	⑥인화점 ⑦공포수·정미중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호출부호					
28. 승무원명부	승무원에 관한 사항(승선하는 승무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선원수첩의 번호 및 직명)을 명부에 기재하여 첨부할 것.					
29. 승객 명부	여객의 유무【있음·없음·미정】 여객이 있는 경우, 여객에 관한 사항(승선하는 여객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출발지 및 최종목적지)을 명부에 기재하여 첨부할 것.					

Date 년 월 일

선장서명 또는 기명날인 _____

Signed and/or Sealed by _____

【기입방법】

번호 8:선박의 평균항해속도를 노트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12:일본의 항구에 입항한 후에 당분간 국제항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인 항구에 대해서 기입한 뒤 앞의 10. 이후 당분간 국내선의 「yes」 을 골라 주십시오.

번호 14: 「없음」 를 골랐을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될 경우에는 번호 16에 경과조치가 적용된 것을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15:선박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해상운송보안지표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통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통보를 해 주십시오.

번호 18:선내에 있어서 수상한 사람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경우, 선내의 감시장치가 고장난 경우, 어떤 이유도 보안조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등 선박의 보안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19:연락을 쉽게 하기 위해서 FAX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FAX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21:입역 하려고 하는 특정해역의 입역예정위치에 ○를 기입하여 입역예정시각을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22:일본항구를 출항한후에 특정해역에 입역 하려고 하는 선박은 입역예정위치에 ○를 기입하여 입역예정시각을 기입해 주십시오.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드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23: 「실시한 국제해상운송보안지표」 는 선박이 실시한 지표를 기입해 주십시오.

「특별한 보안조치 및 그 내용」 은 해당 기항지에 있어서 선박의 보안을 위해서 선박보안지표대응조치에 대해서 실시한 조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과거 10번의 기항지에 일본 항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일본 항구에 기항한 이전의 한목에 대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당해 일본 항구에 관한 기재에 대해서는 「경유항구명」, 「경유항구입항년월일」, 「경유항구출항년월일」 이외의 한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보용지는 해상보안청HP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박보안정보의 통보에 관한 문의는 가장 가까운 관구해상보안본부까지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의 HP도 봐 주십시오.

기관	담당과	주소	전화번호(내선)
제1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北海道小樽市港町5-3	0134-27-0118 (3112)
제2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宮城県塩釜市貞山通3-4-1	022-363-0111 (3117)
제3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神奈川県横浜市中区北仲通5-57	045-211-1118 (3115)
제4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愛知県名古屋市港区入船2-3-12	052-661-1611 (3117)
제5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兵庫県神戸市中央区波止場町1-1	078-391-6551 (3121)
제6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広島県広島市南区宇品海岸3-10-17	082-251-5111 (3121)
제7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福岡県北九州市門司区西海岸1-3-10	093-321-2931 (3115)
제8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京都府舞鶴市字下福井901	0773-76-4100 (3112)
제9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新潟県新潟市万代2-2-1	025-244-4151 (3115)
제10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鹿児島県鹿児島市東郡元町4-1	099-250-9800 (3117)
제11 관구해상보안본부	경비과	沖縄県那覇市港町2-11-1	098-867-0118 (3121)

국토교통성 home page : <http://www.mlit.go.jp/>
 해상보안청 home page : <http://www.kaiho.mlit.go.jp/>

·선박보안정보는 테러 대책을 위해 외국에서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기초정보나 보안조치의 실시상황에 관해서 통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해상보안청에서의 질문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십시오.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입항을 금지될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통보하지 않은 선장 또는 허위통보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으며, 또한 입항(출항)에도 지장이 생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